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남국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4661

발의연월일: 2020. 10. 26.

발 의 자:김남국·김용민·김종민

박범계 • 박주민 • 백혜련

소병철 · 송기헌 · 신동근

최기상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엄정하게 수사하기 위한 독립된 수사기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「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이 제정(법률 제16863호, 2020. 1. 14. 공포, 7. 15. 시행)됨에 따라 통신제한조치 및 압수·수색·검증의 집행에 관한 통지와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통지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통신제한조치 등 집행통지기간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가 공소제기 및 불기소 결정을 한 사건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을 구분하고, 현행 '기소중지 결정'이라는 용어는법률이 아닌 검찰사건사무규칙에서 정의하는 용어로서 사실상 피의자소재불명 등으로 더 이상 수사가 진행될 수 없는 때에 활용되고, 입법예고된 「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

규정」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수사 진행이 어려울 때에 수사중지 결정을 할 수 있으므로 기소중지 결정이라는 문구보다 범용적으로 사용하는 '수사를 중지하는 결정'으로 변경하려는 것임(안 제9조의2제1항·제2항, 제9조의3제1항·제2항 및 제13조의3제1항).

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가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실 또는 사실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실의 통지를 유예하려는 경우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9조의2제5항 및 제13조의3제3항).

법률 제 호

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통신비밀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의2제1항 중 "검사는"을 "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"으로, "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"을 "제8조제1항에 따라"로, "공소를 제기하거나, 공소의 제기 또는 입건을 하지 아니하는 처분(기소중지 결정을 제외한다)을 한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"를 "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 기간 내"로, "기간 등"을 "기간등"로 하고, 같은 항에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제5항 본문 중 "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"를 "제4항에 따라"로, "유예하고자 하는"을 "유예하려는"으로, "관할지방검찰청검사장의"를 "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"으로 하며,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. 검찰청 검사: 공소를 제기하거나, 공소의 제기 또는 입건을 하지 아니하는 처분(수사를 중지하는 결정은 제외한다)을 한 날부터 30 일 이내
- 2.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:
 - 가. 「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 1항제2호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범죄등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

제기하거나, 공소의 제기를 하지 아니하는 처분(수사를 중지하는 결정은 제외한다)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

- 나. 「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6조 제1항에 따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 관하여 검찰청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거나, 제기하지 않은 아니하는 처분(수사를 중지하는 결정은 제외한다)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
- 3. 사법경찰관: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(수사를 중지하는 결정은 제외한다)의 통보를 받거나 내사사건에 관하여 입건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이내
- 1. 검찰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: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승인
- 2.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검사: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의 승 인
- 3. 군 검사 및 군사법경찰관: 관할 보통검찰부장의 승인 제9조의3제1항 중 "검사는"을 "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"으로, "경우그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의 제기 또는 입건을 하지 아니하는 처분(기소중지결정을 제외한다)을 한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"를 "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 기간내"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.

- 1. 검찰청 검사: 공소를 제기하거나, 공소의 제기 또는 입건을 하지 아니하는 처분(수사를 중지하는 결정은 제외한다)을 한 날부터 30 일 이내
- 2.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:
 - 가. 「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 1항제2호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범죄등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, 공소의 제기를 하지 아니하는 처분(수사를 중지하는 결정은 제외한다)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
 - 나. 「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26조제 1항에 따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 관하여 검찰청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거나, 제기하지 않은 아니하는 처분(수사를 중지하는 결정은 제외한다)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
- 3. 사법경찰관: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(수사를 중지하는 결정은 제외한다)의 통보를 받거나 내사사 건에 관하여 입건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

제13조의3제1항제1호 중 "기소중지결정·참고인중지결정"을 "수사를 중지하는 결정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"기소중지결정·참고인중지결정 처분"을 "수사를 중지하는 결정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"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항"를 "제2항"으로, "미리"를 "검찰청 소

속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"으로, "승인을 받아야"를 "승인을, 고위공 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검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의 승인을 받아 야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아 정 제9조의2(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제9조의2(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) ① 검사는 제6조제 관한 통지) ① 검사 또는 사법 1항 및 제8조제1항의 규정에 경찰관은-----제8조제1항 에 따라-----의한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 -----다음 각 호의 거나, 공소의 제기 또는 입건을 구분에 따라 정한 기간 내----하지 아니하는 처분(기소중지 결정을 제외한다)을 한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30일 이 내에 우편물 검열의 경우에는 그 대상자에게, 감청의 경우에 는 그 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가입자에게 통신제한조치를 집 행한 사실과 집행기관 및 그 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 기간등----야 한다. 1. 검찰청 검사: 공소를 제기하 <신 설> 거나, 공소의 제기 또는 입건 을 하지 아니하는 처분(수사를 중지하는 결정은 제외한다)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 <신 설> 2.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: 가. 「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

<신 설>

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률」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범죄등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 기하거나, 공소의 제기를 하지 아니하는 처분(수사를 중지하는 결정은 제외한다) 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 나. 「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률」 제26조제1항에 따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 관하여 검찰청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거나, 제기하 지 않은 아니하는 처분(수 사를 중지하는 결정은 제 외한다)의 통보를 받은 날

3. 사법경찰관: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(수사를 중지하는 결정은 제외한다)의 통보를 받거나 내사사건에 관하여 입건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

로부터 30일 이내

② 사법경찰관은 제6조제1항 <삭 제> 및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 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(기소중지 결정을 제외한 다)의 통보를 받거나 내사사건 에 관하여 입건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때에는 그 날부터 3 0일 이내에 우편물 검열의 경 우에는 그 대상자에게, 감청의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된 전기통 신의 가입자에게 통신제한조치 를 집행한 사실과 집행기관 및 그 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 여야 한다.

- ③ ④ (생 략)
- 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 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유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 명자료를 첨부하여 미리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승인을 얻ㅣ 어야 한다. 다만, 군검사 및 군 사법경찰관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유예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첨부

③ • ④ (현행과 같음)

-----. <단서 삭제>

⑤ 제4항에 따라-----유예하려는----------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-----

<u>하여 미리 관할 보통검찰부장</u>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⑥ (생략)

제9조의3(압수·수색·검증의 집행에 관한 통지) ① 검사는 송·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하여 압수·수색·검증을 집행한 경우 그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의 제기 또는입건을 하지 아니하는 처분(기소중지결정을 제외한다)을 한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3인일이내에 수사대상이 된 가입자에게 압수·수색·검증을 집행한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한다.

<신 설>

- 1. 검찰청 검사 또는 사법경찰

 관: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의

 승인
- 2.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검사: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의 승인
- 3. 군 검사 및 군사법경찰관: 관 할 보통검찰부장의 승인
- ⑥ (현행과 같음)

네9조의3(압수·수색·검증의 집행
에 관한 통지) ① <u>검사 또는</u>
<u>사법경찰관은</u>
<u>경</u>
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
<u>따라 정한 기간 내</u>
1 기키키 기사 지지근 제기의

1. 검찰청 검사: 공소를 제기하

<신 설>

- 거나, 공소의 제기 또는 입건을 하지 아니하는 처분(수사를 중지하는 결정은 제외한다)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
- 2.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:

 가. 「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
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
 률」 제3조제1항제2호에
 해당하는 고위공직자범죄
 등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
 제기하거나, 공소의 제기
 를 하지 아니하는 처분(수
 사를 중지하는 결정은 제
 외한다)을 한 날부터 30일
 이내
 - 나. 「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6조제1항에 따라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관하여 검찰청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거나, 제기하지 않은 아니하는 처분(수사를 중지하는 결정은제외한다)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

<신 설>

② 사법경찰관은 송·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하여 압수·수색·검증을 집행한 경우 그사건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의 통보를 받거나 내사사건에 관하여 입건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때에는 그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사대상이 된 가입자에게 압수·수색·검증을 집행한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
제13조의3(범죄수사를 위한 통신 자사실 확인자료제공의 통지)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3 조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받은 사건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 기간 내에 통신사실 확인자료

3. 사법경찰관: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(수사를 중지하는 결정은 제외한다)의 통보를 받거나 내사사건에 관하여 입건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

<u><삭 제></u>

제	13	ス	0	130	(범	죄	수	사	를		위	한		통	신	
	사	실	<u> </u>	확	인)	자.	显为	제-	공.	의	Ē	長さ	지))	1)
																_
																_
																_
																_
																_

제공을 받은 사실과 제공요청 기관 및 그 기간 등을 통신사 실 확인자료제공의 대상이 된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야 한다.

- 1. 공소를 제기하거나, 공소의 제기 또는 입건을 하지 아니하는 처분(기소중지결정·참고 인중지결정은 제외한다)을 한 경우: 그 처분을 한 날부 더 30일 이내
- 2. 기소중지결정·참고인중지결 정 처분을 한 경우: 그 처분을 한 경우: 그 처분을 한 날부터 1년(제6조제8항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인 경우에는 3년)이경과한 때부터 30일 이내
- 3. (생략)
- ② (생 략)
-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 2항에 따라 통지를 유예하려는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미리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·.
1
<u>수</u> 사를 중지하
는 결정
2. 수사를 중지하는 결정
o /처체되 가야)
3.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
③ 제2항
검찰청 소속 검사 또는 사법경
<u> 찰관은</u>
<u>승인을</u> , 고위공직자범죄수
사처 소속 검사는 고위공직자

	범죄수사처장의 승인을 받아야
④ ~ ⑦ (생 략)	④ ~ ⑦ (현행과 같음)